

## 부속서 II

### 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약속 에 관한 양허표

#### 캄보디아

#### 주해

1. 이 양허표는 제8.7조(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따른 캄보디아의 약속을 규정한다.
2. 이 양허표의 서비스 분류는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서비스분야별 분류표(1991년 7월 10일자 MTN.GNS/W/120)에 기초하고 1991년 유엔 잠정 중앙상품분류(CPC)의 정의를 따른다.
3. 개별 CPC 코드에 대한 (\*\*)의 사용은 그 코드에 대한 구체적 약속이 그 코드에 따른 서비스 전체 범위까지 확대되지 않음을 표시한다.
4. 제8.3조(약속에 관한 양허표) 제4항에 따라 캄보디아는 제8.6조(최혜국 대우) 및 제8.10조(투명성 목록)에 따른 약속을 하지 않는다. 제8.7조(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제5항에 따라 캄보디아는 제8.7조(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제3항에 따른 약속을 하지 않는다.

5. 제8.2조(적용범위) 제3항마호4)목부터 6)목까지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는 특수항공서비스, 지상조업서비스 및 공항운영서비스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6. 약속 안함\*은 기술적 실현가능성의 부족으로 인하여 약속하지 않음을 말한다.

공급 형태:                    1) 국경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 수평적 양허			
이 양허표에 포함된 모든 분야			
보조금		(3), (4) 연구개발을 위한 보조금을 포함하여 보조금은 약속 안함.	
과세 조치		(1), (2), (3) 과세 관련 제한 없음.	
토지		(3) 캄보디아의 자연인 및 법인이 아닌 경우 토지를 임차할 수 있으나 소유할 수 없음.	
획득된 권리	기존의 외국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운영이나 서비스의 공급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허가 또는 그 밖의 형태의 승인에 규정된 소유권, 경영, 운영, 법적 형태 및 활동 범위의 조건은 캄보디아의		

	WTO 가입일에 존재하는 것보다 더 제한적이 되지 않을 것임.		
투자 인센티브	(3) 투자에 관한 법의 규정에 따른 인센티브를 추구하는 투자자는 캄보디아인 직원을 대상으로 고위직으로의 승진을 위한 훈련을 포함하여 적절하고 일관된 훈련을 제공할 의무를 가짐.	(3) 제한 없음.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자연인의 주재</p>	<p>(4) 부속서 IV의 캄보디아 양허표(자연인의 일시 이동에 대한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언급된 범주에 해당하는 자연인의 일시적 입국 및 일시적 체류와 관련된 조치를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p> <p>(1), (2), (3), (4) 캄보디아는 영주권자에 관련된 모든 조치에 대하여 미양허를 유지함.</p>	<p>(4) 시장접근란에 언급된 자연인의 범주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p> <p>(1), (2), (3), (4) 캄보디아는 영주권자에 관련된 모든 조치에 대하여 미양허를 유지함.</p>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I. 분야별 구체적 약속			
1. 사업 서비스			
A. 전문직 서비스			
a) 법률 서비스(CPC 86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캄보디아 법무법인과의 상사연합 <sup>1</sup> 을 통하여 법정에서 고객을 직접 대리하지 못함.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sup>1</sup>외국법(본국법 및 제3국법을 포함한다)과 국제법에 규정된 법률 서비스의 경우, 캄보디아 법무법인과의 상사연합은 요구되지 않는다. 상사연합은 모든 상업적 약정을포함하는 것으로 양해되며, 특정한 법적 형태를 의미하지 않는다.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a) 법률 서비스(CPC861)</p> <p>서비스 공급자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관할국의 법에 대한 외국법자문(본국의 법, 제3국의 법 및 국제법을 포함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b) 회계, 감사, 부기 서비스(CPC862)</p> <p>- 회계, 감사, 부기 (CPC 86211, 86212, 86220)</p>	<p>(1) 감사 서비스를 위해서는 캄보디아에 상업적 주재가 있어야 함.</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c) 세무 서비스(CPC 8630)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건축 서비스(CPC 8671)  (자문, 계획 또는 설계 서비스)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e) 엔지니어링 서비스(CPC8672) f) 종합 엔지니어링 서비스(CPC8673) g) 도시계획 및 경관건축 서비스(CPC867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h) 의료 및 치과 서비스 (CPC 9312) - 전문 의료 서비스(CPC 93122) - 치과 서비스 (CPC 93123**)  치과교정 서비스, 구강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서비스의 제공은 캄보디아 법인과 의 합작 투자를 통하여 허용됨.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외과및 그 밖의 전문 치과 서비스로 한정됨.			
-----------------------------	--	--	--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B.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b>			
a) 컴퓨터설비 설치 관련 자문서비스(CPC 841) b) 소프트웨어 시행 서비스(CPC842) c) 데이터 프로세싱 서비스(CPC843) d)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CPC 844) e) 기타(CPC 845+84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C. 연구개발 서비스</b>			
a) 자연과학 <b>연구개발</b> 서비스(CPC 851)  - 농업과학에 관한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p>연구 및 실험개발 서비스(CPC85104)</p>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b) 인문사회과학 연구개발 서비스(CPC852)</p>			
<p>- 경제학에 관한 연구 및 실험개발 서비스(CPC 85202)</p>			

공급 형태:

1) 국경간 공급

2) 해외 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E. 운영자를 동반하지 않는 임대/리스 서비스</b>			
d) 그 밖의 기계 및 장비관련(CPC 83106-83109)  - 스튜디오 녹음 장비 임대 및 리스(CPC 8310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F. 그 밖의 사업 서비스</b>			
a) 광고 서비스(CPC 87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 시장 조사 및 여론 조사 서비스(CPC864) - 시장 조사 서비스 (CPC86401)  c) 경영 자문 서비스(CPC865)  d) 경영 자문 관련 서비스(CPC866)  e) 기술적 검사 및 분석 서비스(CPC 8676)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h) 광업 부수 서비스(CPC 883 + 5115)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p>- 광업 부수 서비스 (CPC883**)</p> <p>j) 에너지 유통 부수 서비스(CPC 887)</p> <p>수수료 또는 계약에 근거하여 가정용, 산업용, 상업용 및 그 밖의 사용자에게 전기, 가스연료, 증기 및 온수를 전송하거나 유통하는 것과 관련된 자문 서비스로 한정하여 적용됨(CPC 887**)</p>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	--	--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k) 직업 소개 및 공급 서비스(CPC 872)  m) 관련 과학 및 기술 자문 서비스(CPC 8675) - 엔지니어링 관련 과학 및 기술 자문 서비스(CPC8675)  q) 포장 서비스(CPC 876)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2. 커뮤니케이션 서비스</b>			
<b>B. 쿠리어 서비스</b>			
쿠리어 서비스(CPC 751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b>C. 통신 서비스</b></p> <p>이러한 약속은 “기본통신서비스 약속에 관한 양허를 위한 주해” (S/GBT/W/2/1차개정안) 및 “주파수 가용성에 관한 시장접근 제한” (S/GBT/W/3)에 따라 이루어짐.</p>			
<p>a) 음성전화 서비스(CPC7521)</p> <p>b) 패킷교환 데이터 전송 서비스(CPC 7523**)</p> <p>c) 회선교환 데이터 전송 서비스(CPC 7523**)</p> <p>d) 텔렉스 서비스 (CPC7523**)</p> <p>e) 전신 서비스(CPC 7522)</p> <p>f) 모사전송 서비스(CPC 7521**+7529**)</p> <p>g) 전용회선 서비스(CPC 7522**+7523**)</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최대 49퍼센트까지의 현지 지분 보유요건에 따름.</p>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캄보디아는 첨부(통신 서비스 참조 문서)에 기재된 추가적 약속을 함.</p>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h) 전자메일 (CPC 7523**) i) 음성메일(CPC7523**) j) 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검색(CPC7523**) k) 전자적 데이터 교환(EDI) (CPC7523**) l) 저장 및 전송, 저장 및 검색을 포함한 고도 또는 부가 가치 모사전송 서비스(CPC 7523**) m) 코드 및 프로토콜 변환 n) 온라인 정보또는 데이터 프로세싱(거래 프로세싱을 포함함) (CPC84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o) 그 밖의 서비스:	(1) 제한 없음.	(1) 제한 없음.	캄보디아는 허가받은 이동통신

<p>이동 서비스</p>	<p>(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서비스 공급자가 그러한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사용되는 기술을 선택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약속함.</p>
---------------	--	--	--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3.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b>			
<p>A 빌딩 관련 일반 건설업(CPC 512)</p> <p>B 토목 관련일반 건설업(CPC513)</p> <p>C 설치 및 조립 작업(CPC 514+CPC516)</p> <p>D 빌딩 완성 및 마무리 작업(CPC517)</p> <p>E. 기타(CPC 511+515+518)</p>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b>4. 유통 서비스</b>			
<p>A. 위탁중개인서비스 (CPC 621)</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B. 도매 서비스(CPC 62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 도매 서비스(CPC 61111)</li> <li>- 자동차 부품 판매(CPC6113)</li> <li>- 모터사이클 및 관련 부품판매 (CPC6121)</li> <li>- 라디오 및 텔레비전 장비, 악기 및 레코드, 음악 악보 및 테이프 도매 서비스(CPC62244)</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한 없음.</li> <li>(2) 제한 없음.</li> <li>(3) 제한 없음.</li> <li>(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한 없음.</li> <li>(2) 제한 없음.</li> <li>(3) 제한 없음.</li> <li>(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li> </ul>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C 소매 서비스(CPC 631+632, 6111+6113+612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 소매 판매 (CPC61112)</li> <li>- 자동차 부품 판매 (CPC6113)</li> <li>- 모터사이클 및 관련 부품 판매(CPC 6121)</li> </ul> <p>대형 슈퍼마켓과 백화점<sup>2</sup>으로 한정하여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약품, 의료 및 정형외과물품의 판매를(CPC63211) 제외하고, 식품 및 비식품 소매 서비스 (CPC631+63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한 없음.</li> <li>(2) 제한 없음.</li> <li>(3) 제한 없음.</li> <li>(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제한 없음.</li> <li>(2) 제한 없음.</li> <li>(3) 제한 없음.</li> <li>(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li> </ul>	

<p>- 라디오 및 텔레비전 장비, 악기, 음악 악보, 그리고 오디오·비디오 레코드 및 테이프 소매 서비스(CPC63234)</p>			
---	--	--	--

---

2대형 슈퍼마켓 및 백화점은 바닥 면적 2,000m<sup>2</sup>이상의 곳을 말한다.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D. 프랜차이즈 서비스(CPC 892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기타 - 자동차연료 소매 판매(CPC61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5. 교육 서비스			
C. 고등교육 서비스(CPC923)  D. 성인교육(CPC924)  E. 그 밖의 교육 서비스(CPC92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캄보디아는 국제적 관행에 따라 교육 및 전문직 서비스에 대하여 시장상의 목적으로 독립적인 국가 인증 과정을 수립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임.
6. 환경 서비스			
A. 폐수 서비스(CPC 9401) B 폐기물 처리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p>서비스(CPC9402)</p> <p>C. 위생 및 유사 서비스(CPC9403)</p> <p>D.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기가스 정화(CPC9404)</li> <li>- 소음 저감 서비스(CPC9405)</li> <li>- 자연 및 경관 보호 서비스(CPC 9406)</li> <li>- 다른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그 밖의 환경 서비스(CPC9409)</li> </ul>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	--------------------------------------	--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7. 금융서비스			
A. 모든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CPC 812**)			
a) 생명, 상해 및 건강 보험 서비스(CPC 8121)  - 생명보험 서비스 (CPC 81211)	(1) 자연인 또는 법인은 캄보디아에서 보험 사업을 수행하도록 허가받은 보험사와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b) 비생명보험 서비스(CPC 8129)</p>	<p>(1) 해상, 항공 및 운송 보험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p> <p>해상, 항공 및 운송 보험 서비스는 캄보디아에서 보험 사업을 수행하도록 허가받은 보험사에 의하여 공급될 수 있음.</p> <p>그 밖의 모든 비생명보험 서비스의 경우, 자연인 또는 법인은 캄보디아에서 보험 사업을 수행하도록 허가받은 보험사와만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c) 재보험 및 재재보험(CPC 8129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회사는 위험의 20퍼센트를 캄보디아 리(Cambodia Re)에 재보험을 들어야함.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보험 부수 서비스(중개 및 대리 서비스를 포함함) (CPC 8140)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B. 은행 및 그 밖의 금융 서비스(보험 제외)</b>			
<p>하위분야 (a), (b) 및 (d)에 대한 약속은 상업 은행으로 한정함.</p> <p>a) 대중으로부터의 예금 및 그 밖의 상환성 자금의 인수(CPC 81115 - 81119)</p> <p>b) 소비자대출, 주택담보대출, 팩토링 및 상업거래 용자를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여신(CPC 8113)</p> <p>d) 모든 지급 및 송금 서비스(CPC 81339**) - 신용, 선불 및 직불 카드, 여행자수표 및</p>	<p>(1) 대중으로부터의 예금은 캄보디아에 재투자되어야 함.</p> <p>(2) 제한 없음.</p> <p>(3) 은행으로서 승인된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허용됨.</p>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은행수표를 포함하는 모든 지급 및 송금 서비스(CPC 81339**)			
---	--	--	--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하위분야 (c) 및 (e)에 대한 약속은 상업은행으로 한정함.</p> <p>c) 금융리스(CPC 8112)</p> <p>e) 보증 및 약정(CPC 81199**)</p>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관련 법과 규정이 수립되기 전까지 약속 안함.</p>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f) 거래소, 장외시장, 또는 다른 방법으로, 다음을 자기계좌 또는 고객계좌로 거래하는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폐시장상품(수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를 포함함) CPC (81339**)</li> <li>- 외환(CPC 81333)</li> <li>- 선물 및 옵션을 포함하는 파생상품 (CPC81339**)</li> <li>- 스왑, 선도금리계약과 같은 상품을 포함하는 환율 및 이자율 상품(CPC 81339**)</li> </ul>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하위분야 (f)에서 (1)까지의 경우, 캄보디아 정부가 어떠한 유형의 실체가 그러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지 결정하고, 관련 법과 규정이 수립되고, 그러한 사업이 정부 및 그 밖의 지정 당국에 의하여 승인되기 전까지는 약속 안함.</p>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양도성 증권 (CPC 81321\*)
- 금괴를 포함한 그 밖의 유통증권 및 금융자산 (CPC81339\*\*)

g) 주간사로서의 인수 및 모집을 포함하는 모든 종류의 증권 발행에의 참여(공모 또는 사모) 및 그러한 발행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CPC 8132)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h) 자금중개업(CPC 81339**)</p> <p>i) 현금 또는 포트폴리오 운용, 모든 유형의 집합투자운용, 연금기금운용, 보관·예탁 및 신탁서비스와 같은 자산운용(CPC 8119**+81323*)</p> <p>j) 증권, 파생 상품 및 그 밖의 유통증권을 포함한 금융자산의 결제 및 청산 서비스(CPC 81339** 또는81319**)</p> <p>k) 신용조회와 분석, 투자 및 포트폴리오 조사와 자문, 인수 및 기업구조조정과 전략에 관한 자문을 포함하여, 부속서 8-</p>			

<p>가(금융서비스) 제1조나호5목부터 15목까지에 열거된 모든 활동에 대한 자문, 중개 및 그 밖의 부수 금융 서비스(CPC 8131 또는 8133)</p> <p>1) 그 밖의 금융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금융정보, 그리고 금융 데이터 프로세싱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제공(CPC8131)</p>			
--	--	--	--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8. 보건 관련 및 사회 서비스			
<p>A. 병원 서비스 (CPC 9311)</p> <p>개인 병원 및 진료소의 소유와 경영에만 한정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기술적 사안을 담당하는 이사 중 최소 한 명은 캄보디아인이어야 함.</p>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9.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			
<p>A. 호텔 및 레스토랑 (케이타링을 포함함) (CPC 641- 643)</p> <p>- 호텔(CPC 64110)</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3성급 이상 호텔<sup>3</sup>의 경우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sup>3</sup>3성급 호텔은 캄보디아 호텔 등급 분류에 정의된다.

분야 또는 하위 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약속
<p>A. 호텔 및 레스토랑(케이타링 포함) (CPC 641- 643)</p> <p>- 레스토랑(CPC 642, 643)</p>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지역 특성<sup>4</sup>을 고려하여 허가가 부여됨.</p>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약속 안함.</p>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sup>4</sup>주요 기준: 기존 레스토랑의 수 및 이에 대한 영향, 장소의 역사적·예술적 특성, 지리적 산포, 교통조건에 대한 영향 및 새로운 고용 창출.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B. 여행알선대행 서비스 (CPC7471)</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여행사의 경우 외국인 지분 참여는 51퍼센트로 제한됨.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C. 관광객 안내 서비스 (CPC 7472)</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10. 레크리에이션,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p>A.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연극, 라이브 밴드 및 서커스 서비스를 포함함) (CPC 9619)</p> <p>- 달리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엔터테인먼트 서비스(CPC 96199):</p> <p>- 영화상영서비스를 포함한 영화관 서비스</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11. 운송 서비스			
A. 해상 운송 서비스			
a) 여객 운송 (CPC7211) b) 화물 운송(CPC 7212) - 연안운송을 제외한 국제 운송(화물 및 여객) (CPC7211 및 7212)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약속 안함. (4)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약속 안함. (4) 약속 안함.	제8.1조(정의)사호2목에 따라 국제해상운송 공급자에게 달리 이용 가능하지 않는 한, 다음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접근을 거부하는 조치는 적용되지 않음. 1. 예선 지원 2. 식량·연료 공급 및 급수 3. 쓰레기 수거 및 밸러스트 폐기물 처리 4. 비상 보수 시설 5. 부선 양하 및 수상택시 서비스 6. 선박 대리점 7. 통관 중개 8 하역 및 터미널 서비스

			9 조사 및 분류 서비스
--	--	--	---------------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C. 항공 운송 서비스</b>			
d) 항공기 정비 및 수리 (CPC8868**)  - 항공기 수리 및 정비 서비스(CPC8868**)  e) 항공 운송 지원 서비스 (CPC746)  - 항공운송 서비스 판매 및 마케팅 - 컴퓨터 예약 시스템 서비스(CRS)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F. 도로 운송 서비스</b>			
a) 여객 운송 (CPC 7121 +7122)  b) 화물 운송(CPC 712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p>C) 운영자를 동반하는          상업용자동차 임대(CPC          7124)</p> <p>d) 도로운송 장비의 정비 및          수리(CPC6112+8867)</p> <p>e) 도로운송 지원 서비스          (CPC 744)</p>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	---	---	--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G. 파이프라인 운송</b>			
a) 연료 운송 (CPC 7131)  b) 그 밖의 상품 운송 (CPC7139)	(1) 사례별로 국가가 부여한 양허의 계약을 통하여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2) 제한 없음. (3) 사례별로 국가가 부여한 양허의 계약을 통하여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첨부

### 통신 서비스 참조 문서

#### 적용범위

다음은 기본통신 서비스를 위한 규제적 틀에 대한 정의 및 원칙이다.

#### 정의

“이용자”란 서비스 소비자 및 서비스 공급자를 말한다.

“필수 설비”란 다음의 공중통신 전송망 또는 서비스의 설비를 말한다.

가. 단일의 또는 제한된 수의 공급자에 의하여 배타적 또는 지배적으로 제공되는 것, 그리고

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제적 또는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대체될 수 없는 것

“지배적 사업자”란 다음의 결과로 기본통신 서비스의 관련 시장에서 참가조건(가격 및 공급에 관한 것)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급자이다.

가. 필수 설비에 대한 지배, 또는

나. 시장에서의 자신의 지위 이용

## 1. 경쟁보장장치

### 1.1 통신에서의 반경쟁적 관행의 방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지배적 사업자인 공급자가 반경쟁적 관행에 관여하거나 이를 지속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조치가 유지된다.

### 1.2 보장장치

위에 언급된 반경쟁적 관행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가. 반경쟁적 교차보조에 관여하는 것

나. 반경쟁적 결과를 수반하며 경쟁자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 그리고

다. 그 밖의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그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필수설비에 관한 기술적 정보 및 상업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지 않는 것

## 2. 상호접속

2.1 이 절은 구체적 약속이 이루어진 경우 하나의 공급자의 이용자가 다른 공급자의 이용자와 통신을 하고 다른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중통신 전송망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와 연결하는 것에 적용된다.

### 2.2 상호접속의 보장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은 그 망 내의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모든 지점에서 보장될 것이다. 그러한 상호접속은,

가. 비차별적 조건(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다) 및 효율에 따라, 그리고 자신의 동종 서비스에 대하여 또는 비계열사 서비스 공급자의 동종 서비스에 대하여 또는 자신의 자회사나 그 밖의 계열사에 대하여 제공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는 품질로 제공된다.

나.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경제적 실현 가능성을 고려한, 그리고 공급자가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하여 요구되지 않는 망 요소 또는 설비에 대해서는 지불할 필요가 없도록 충분히 세분화되어 있는 조건(기술 표준 및 규격을 포함한다)과 원가지향적인 효율로 시의적절하게 제공된다. 그리고

다.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추가적인 설비의 구축 비용을 반영하는 요금을 조건으로, 다수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망 중단점에 추가한 지점에서 제공된다.

### 2.3. 상호접속협상을 위한 절차의 공개적 이용 가능성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위한 적용가능한 절차는 공개될 것이다.

#### 2.4. 상호접속약정의 투명성

지배적 사업자는 자신의 상호접속약정이나 표준상호접속 제안을 공개할 것이 보장된다.

#### 2.5. 상호접속: 분쟁해결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을 요청한 서비스 공급자는,

가. 언제라도, 또는

나. 공개적으로 명시된 합리적인 기간 후 상호접속을 위한 적절한 조건 및 요율이 이전에 수립되지 않은 한도에서, 이와 관련된 분쟁을 합리적인 기간에 해결하기 위하여 아래 제5항에 언급된 규제기관일 수 있는 독립적인 국내기관에 구제를 신청할 것이다.

### 3. 보편적 서비스

어떠한 당사자라도 자신이 유지하려는 보편적 서비스 의무의 종류를 정의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의무는 그 자체로 반경쟁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그러한 의무는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경쟁중립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그 당사자에 의하여 정의된 종류의 보편적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정도 이상의 부담을 지우지 않아야 한다.

### 4. 허가 기준의 공개적 이용 가능성

허가가 요구되는 경우, 다음이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할 것이다.

가. 모든 허가 기준과 허가 신청에 대한 결정에 이르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기간, 그리고

나. 개별 허가의 조건

요청이 있는 경우, 허가 거부 사유는 신청인에게 통지될 것이다.

#### 5. 독립적인 규제기관

규제기관은 어떠한 기본통신서비스 공급자로부터 분리되고,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규제기관의 결정과 규제기관이 이용하는 절차는 모든 시장 참여자에 대하여 공평하다.

#### 6. 희소자원의 분배 및 이용

주파수, 번호 및 선로설치권을 포함한 희소자원의 분배 및 이용에 관한 모든 절차는 객관적이고 시의적절하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다. 분배된 주파수 대역의 현재 상황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할 것이나, 특정한 정부의 사용을 위하여 분배된 주파수에 대한 세부 내역은 요구되지 않는다.